

수원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2가단5081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담당변호사 박정혁, 문옥, 양선화, 유병
일)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1.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1. 6.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1. 6. 30.
접수 제802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곽동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6층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2층 호 48.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 279㎡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79분의 21.28

- 이 상 -

[별지]

청 구 원 인

1.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소외 C와 사이에, 소외 C이 소외 D 주식회사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과 사이에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 채무 등의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증권을 피보험자에게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아 래

보험계약체결일: 2008. 3. 6.

증권번호: E

보험가입금액: 금20,000,000원

보험가입기간: 2008. 2. 1.부터 2011. 3. 31.까지

보증내용: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 채무 등의 지급보증

2. 보증보험계약 내용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

위 보증보험계약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원고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후부터는 연 12%입니다.

3. 보험금지급 및 구상금채권발생

가. 그 후 보험계약자인 소외 C은 2009. 7. 10. 피보험자에 대한 약정불이행등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피보험자는 원고 발행의 위 보증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7. 23. 피보험자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13,384,393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등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74937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28.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13,075,626원 및 그중 금12,489,777원에 대하여 2009. 11. 14.부터 2010. 1. 1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라.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금33,324,562원(= 위 보증보험에 따른 지급보험금잔액12,089,399원 + 지급보험금에 대한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09.

7. 24.부터 2022. 2. 10.까지 미수이자 금21,077,681원 + 채권보전비용 등 미수금 잔액 157,482원, 2022. 2. 10.현재)입니다.

4. 사해행위취소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제공행위 등

소외 C은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니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동기소 2021. 6. 30.자 접수 제80297호로 채권 최고액 금200,000,000원, 채무자 소외 C, 근저당권 피고 B 명의로 2021. 6.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피보전권리

소외 C은 피보험자에 대한 약정불이행으로 원고의 보험금지급과 위 집행권원으로 인한 구상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위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다. 사해행위

(1) 이에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소외 C은 원고의 구상채권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6.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직후에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소외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2) 소외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은 명백하고, 결국 원고로서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바,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C은 피보험자에 대한 약정불이행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과 원고의 집행권원으로 구상권 행사를 예견할 수 있던 시점에 소외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소외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된 점, 피고 B는 소외 C과 평소 금전거래 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가까운 지인인 점, 피고 B는 기존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소외 C의 악의는 명백하고, 수익자인 피고 B는 악의로 보여지며, 수익자의 악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정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호 판결 참조).

라, 이에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합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 6.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소외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